

# 논문투고 규정

제정 : 2018년 3월 1일

최근 개정 : 2025년 2월 1일

## 제1조(학술지 명칭)

- 1) 본 학술지는 『지식과 교양』이라 칭한다.
- 2)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, 지식의 대중화, 교양 관련 이론,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.

## 제2조(목적)

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『지식과 교양』의 투고·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(발간횟수 및 시기) (2023년부터 적용)

- 1)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.
- 2)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, 7월 30일, 11월 30일로 정하되,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3)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,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,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.
- 4)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(접수일자), 심사(수정)일자,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.

## 제4조(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) (2020.12.01. 개정)

- 1)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(<https://lic.jams.or.kr>)에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2) 논문투고자는 『지식과 교양』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,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## 제5조(게재불가 논문)

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.

- 1)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
- 2)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
- 3) 외국저서, 논문,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
- 4) 석·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
※ 석·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,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. 단,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.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- 5)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
- 6) 이전 호에서 '게재철회'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『지식과 교양』에 재투고할 수 없다.
- 7)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,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## 제6조(논문투고 방법)

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
- 1)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mokwon.ac.kr/lic>) ‘논문투고 안내’에 따라,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(<https://lic.jams.or.kr>)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.
- 2) 삭제
- 3) 모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‘연구윤리서약서’, ‘저작권이양동의서’, ‘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’, ‘논문원문파일(저자, 소속 삭제)’을 첨부해야 한다.
- 4)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.

## 제7조(투고자 논문작성 양식)

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.

- 1) 논문은 『지식과 교양』 논문작성 양식 기준 10매~ 20매(국·영문 초록, 그림·각주 포함)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『지식과 교양』 논문작성 양식 기준 25매(참고문헌, 초록 제외)를 초과할 수 없다.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쪽당 1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.
- 2)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‘한글2007’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3) 논문은 한국어·영어·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.
- 4) 원고는 논문 제목, 성명(소속 및 직위는 \*모양 각주로 표기), 목차, 본문, 참고문헌, 국문초록 및 주제어, 영문제목, 영문성명, 영문초록,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- 5)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(제1저자)와 부저자(교신저자, 공동저자 등)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,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.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참고문헌을 구비하되,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.
- 7)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.

소속기관	직위	투고자 정보
대학	교수, 강사	성명/ 대학명/ 직위(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강사 등)
	박사 후 연구원	성명/ 대학명/ 박사 후 연구원
	학생	성명/ 대학명/ 과정(학부생, 석사과정, 박사수료 등)
유초중고 학교	교사	성명/ 학교명/ 교사
	학생	성명/ 학교명/ 학년
연구기관	연구원	성명/ 기관명/ 직위(연구위원, 부연구위원 등)
기타기관	공무원, 사원 등	성명/ 기관명/ 직위
소속 없음	성인	성명/ 대학명/ 종별 학위 성명/ 전 소속/ 직위 성명/ 연구자(또는 시인, 소설가, 비평가 등)
	미성년자	성명/ 학교명/ 졸업(또는 수료, 중퇴 등)

8)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『지식과 교양』 논문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.

(1) 삭제

① 삭제

② 삭제

(2) 삭제

① 삭제

② 삭제

③ 삭제

(3) 삭제

① 삭제

② 삭제

③ 삭제

④ 삭제

(4) 삭제

① 삭제

② 삭제

③ 삭제

④ 삭제

⑤ 삭제

(5)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- 1단계 : 1. 2. 3.

- 2단계 : 1) 2) 3)

- 3단계 : (1) (2) (3)

- 4단계 : ① ② ③

(6)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.

① 영화/영상/웹툰 작품의 경우는 < >를, 문학작품, 논문의 경우는 「 」를, 단행본인 경우 『 』를, 음악 관련 작품인 경우는 << >>를 사용한다.

② 강조 및 간접인용에는 홑따옴표 ‘ ’를, 직접인용에는 겹따옴표 “ ”를 사용한다.

(7) 논문의 각주, 참고문헌, 초록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
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, 저서명, 출판사명, 출판사 소재지(외국어일 경우), 출판연도,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.

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.

•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.

저자, 『저서명』, 출판사, 출판연도, 인용쪽수.

예) 흥길동, 『교양교육의 역사』, 한바퀴, 2005, 78쪽.

• 한국어 논문(학술지 및 학위)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.

저자, 「논문명」, 『학술지』권/호, 출판사, 출판연도, 인용쪽수.

예) 흥길동, 「교육연구의 규칙」, 『교양연구』24집, 2009, 21쪽.

•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.

저자, 번역자, 『저서명』, 출판사, 출판연도, 인용쪽수.

저자, 번역자, 「논문명」, 『저서명/학술지』권/호, 출판사, 출판연도, 인용쪽수.

예) 잭 우드 저, 흥길동 역, 『교양교육』, 한바퀴, 2005, 81쪽.

- 영문(외국어) 저서는 이탤릭체로, 영문(외국어) 논문은 겹따옴표 “ ”로 표기한다.
  - 예) Jack Wood, *Social effectiveness: on some Asian College's education in the 1980s*, trans. Celia Britton, Annwyl Williams, Ben Brewster, and Alfred Guzzetti, London: HumanArts, 1982, p.23.
  - 예) Kimberly Woods, “Social effectiveness: on some Asian College's education in the 1980s”, *Education*, vol. 30, no. 3, 1989, pp.51-65.
- 신문/잡지 기사의 경우 작성자, “기사명”, <신문/잡지명>, 기사 날짜순으로 작성한다.
  - 예) 흥길동, “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”, <교양일보>, 2011.05.21.
-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, 사이트 주소,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.
  - 예)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, <https://www.mokwon.ac.kr/lic>, 2022.05.21.
-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.
  -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(註)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, 위의 논문이라 표기한다.
    - 예) 위의 책(위의 논문), 21쪽.
  -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(註)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,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.
    - 예) 흥길동, 앞의 책(앞의 논문), 21쪽.
  - 영문(외국어)인 경우 바로 위의 주(註)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., 로 표기한다.
    - 예) Ibid., pp.20-21.
  -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(註)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. cit.,로 표기한다.
    - 예) Michael, op. cit., p.21.
- ④ 참고문헌 작성 요령
  -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.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,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,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, 단행본, 논문, 신문기사,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.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,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.
  - 영문(외국어)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, 국문 서적은 『 』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,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.
  -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.
    - 예) 김병정, 「영화 <흔자>의 롱테아크와 촬영기술 연구」, 『지식과 교양』8호,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, 2021, 25~47쪽.
    - 예) 흥길동, 『교양교육의 역사』, 교양과 교육사, 2005.
    - 예) Bergstrom, Johns. ed. “Human Arts: Culture and Society”, *Arts Histories*, Berkely: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, 1999, pp.50-85.
    - 예) Donald, Stephen. *Questions of Liberal Arts*, Bloomington: Indiana University Press, 1989.
    - 예) Lacan, Jacques. “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‘I.’” In *Ecrits: a selection*, Trans. Alan Sheridan. New York : Norton, 1977.

#### ⑤ 국문·영문(외국어) 초록 및 국문 요약문 작성 요령

-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,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. 영문(외국어)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.
-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, 소속을 병기한다.

(8) 기타 편집사항은 『지식과 교양』 논문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.

#### 제8조(투고자 논문심사)

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. 단, 편집위원회가 기획,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,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.

#### 제9조(논문 수정)

- 1)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 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2)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.
- 3)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.

#### 제10조(논문 책임)

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.

#### 제11조(심사료와 게재료)

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.

- 1)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0,000원으로 한다.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.
  - 2)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.
    - 일반 논문 : 200,000원
    - 연구비 수혜논문 : 400,000원
  - 3)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0,000원을 납부해야 한다.
- \* 논문작성 양식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(제7조 1항 참조).
- \*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'게재철회'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논문 게재가 '확정'된 경우, 투고자는 '게재철회'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.

#### 제12조(저작권) (2021.11.01. 개정)

- 1)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'저작물의 이용' 권한은 목원대학교(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)에 위임한다.
- 2)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『지식과 교양』에 위임 할 것을 '논문투고신청서'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(기타)

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14조(개정)

본 규정은 『지식과 교양』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

#### 부 칙

- 1)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)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)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)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)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)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)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